

언어능력 가산점(제15조제5항제1호 관련)

구 분	국어능력(0.3)			외국어능력(0.5)		
	1급	2급	3급	토익 870점 이상	토익 790점 이상	토익 730점 이상
평정점	0.3	0.2	0.1	0.5	0.3	0.2

※ 비고

1. 국어능력 가산점과 외국어능력 가산점은 합산하여 0.5점을 초과할 수 없고,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매년 가점 평정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.
2. 국어능력의 평정점은 「국어기본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한다. 다만 시행기관이나 검정방법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3. 토익 외에 토플, 토플 등 영어시험과 그 밖의 외국어능력의 취득점수별 평정점은 위 표와 같은 수준으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.